

한방 칼럼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

<지난호에서 계속됩니다.>

■ 아토피 동반 증상

1. 기초 체온 조절력 저하로 인한 증상
뜨거운 것을 잘 먹지 못한다.
추위나 더위를 잘 탄다
열이 얼굴로 오르는 상열증이 있다.
하루 중 특정 시간이 되면 열이 오른다.
손발과 아랫배가 찬 편이다.
환절기에 증세가 심해진다.

2. 면역기능 이상으로 인한 증상

감기에 잘 걸린다.
염증질환이 잘 낫지 않는다.
알레르기질환 및 두드러기가 잘 생긴다.
피부에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오래 간다.
임파절 부위가 잘 붓는다.
류마티즘, 원형탈모, 갑상선과 같은 면역질환이 있다.
입안이나 입가에 구내염, 구각염이 잘 생긴다.

3. 장기능과 해독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이 있다.
특정 음식(인스턴트, 육류, 튀김, 우유, 팥콩, 갑각류)에 과민 반응이 있다.
변비 증세가 심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고 방귀 냄새가 독하다.
소화가 잘 안 된다.

4. 심, 폐 기능 저하로 인한 증상

비염, 천식 증세가 있다.
목이 자주 붓는다.



5. 피부 또는 점막 기능 이상으로 인한 증상

피부 습진, 건선, 알레르기 결막염, 접촉성 피부염
피부가 건조하고 윤기가 없고 각질이 많이 발생한다.
땀이 잘 나지 않는다.

6. 환경과 스트레스로 인한 증상

짜증을 잘 낸다.
불면증, 얇은 수면, 다몽, 자주 깬과 같은 수면 장애가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다.
인내심이 부족해 진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 피부 증세가 더 심해진다.
불안하다.
무기력하고 삶의 의욕이 없다.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 한다.
과식, 폭식, 야식을 잘한다.
소화는 잘 되지만 배가 자주 고프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장이 늦거나 작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아큐메델 한의원 원장 최준용
한의학 박사 LAc, Ph.D
TEL (213) 598-3047
1210 S. Euclid St. #A
La Habra, CA 90631



법률 칼럼

601A 면제 실제 승인 사례별 분석

601A 면제 규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최근 승인 케이스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출국하여 영주권 인터뷰를 잘 마치고 영주비자로 재입국하여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먼저 약 15년 전 캐나다 국경을 통해 밀입국해 미국에서 계속 서류미비자로 체류하다가 약 3년 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40대 남자의 경우입니다. 밀입국한 사람들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도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계속 서류미비 상태로 미국에 체류를 하다가 2017년 초에 저희 사무실과 601A 면제 건으로 계약을 했고, 케이스 진행을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승인 케이스는 40대 여자로 역시 캐나다 국경으로 밀입국을 했습니다. 미국에 서류 미비 상태로 체류하다가 영주권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고객은 영주권자 배우자가 이미 이민청원서/초청장(I-130)을 접수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저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달리 영주권자 배우자는 초청장 승인 이후에도 영주권 문호가 열릴 때까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고객의 경우는 2년을 기다린 후에 문호가 오픈되어 찾아온 경우였습니다. 승인이 난 초청장이 있었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케이스를 바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601A 면제를 신청하려면 먼저 승인이 난 이민청원서/초청장 (이 경우는 I-130 Petition)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분은 아직 초청장도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먼저 시민권자 배우자의 초청으로 이민청원서(I-130)을 접수했습니다. 약 6개월 후에 이 초청장이 승인을 받았고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는 우선일자가 없어서 영주권 문호가 항상 오픈인 관계로 이때 바로 601A 면제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분의 경우는 두 분의 직계 가족, 배우자와 어머니가 미국에 계셨고 배우자와 어머니가 모두 영주권자였습니다. 두 직계 가족들이 육체적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서 약물치료 관련 처방전 등을 제출하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에 대한 서류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녀들의 양육비 부분도 강조하였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601A는 불법체류의 불법성을 면제해주는 절차로 승인 요건은 미국 내에 직계가족(배우자 또는 부모)가 있어야 하고, 미국 내 거주하는 배우자 또는 부모님이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계가족분들이 만약 601A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로 의사의 소견서와 약물치료 처방전 등을 제출했고 또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증거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미성년자녀들의 어려움은 고려 대상이긴 하지만 결정적 승인 요건은 아닙니다. 이 케이스도 역시 승인을 받았고 위에 언급한 절차대로 출국해 인터뷰를 마치고 영주비자로 입국해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면제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후에 National Visa Center에 영주권 신청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였고 1달반만에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영주권 인터뷰가 잡혔고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